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성산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석	박 *석 1965-11-28	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우곡2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2-29
김 *민	김 *민 1972-12-24	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우곡2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2-29